

의안번호	2214979
의 퇴 인	안호영 의원
회 답 일	2026.2.5.
추 계 번호	25B67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200만원, 2031년 7,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6,000만원(연평균 7,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 제72조제8항)	72	72	72	72	72	360	7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나라장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함. 이 경우 공표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후단 신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제5항)	의무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제6항 신설)	재량규정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함(제7항 신설)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제8항 신설)	재량·의무규정
2	안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항)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후단,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 미대상(제1항 및 제3항, 제5항)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되,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 작성 및 보존 의무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2항)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및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표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미대상(제6항, 제7항) –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비용추계(제8항)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2	안 제175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²⁾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나, 본 추계서는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추계 첫해인 202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 1) 2024년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통계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비교 분석
 - 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용역예산: 5,400만원(2024년)
 - (유사사례 2)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방안 연구
 - 주요내용: 감정노동 취약 직종 및 업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이행 상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 업종 및 직종별 개선 방안 마련
 - 수행기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 용역예산: 9,000만원(2025년)

[표 4]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등 (안 제72조제8항)	72	72	72	72	72	36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나라장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